

우선, 판결 등록 통지서(양식 **SC-130** 또는 양식 **SC-200**)에 기재된 법원의 판결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본 양식을 읽으십시오. 귀하의 승소 또는 패소 여부에 관계없이, 본 양식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사항! 법원이 귀하에게 판결 등록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한 후 **30** 일 내에 귀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중요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 등록 통지서를 우편 송달한 경우,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법원 서기 우편 송달 증명서에 발송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청구에서 법원이 귀하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귀하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통상적으로 종국적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항소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판결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귀하는 판결확정 채무자입니다. 법률상 귀하는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판결확정 채권자에게 직접 판결금액 지급.
- 법원에 판결금액 납부(이와 같이 지급하려면, 양식 **SC-145**, 판결금액 법원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법원에 분할지급 요청(이와 같이 지급하려면, 양식 **SC-220**, 분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 채권자는 지급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고지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잔액 전액은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회수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판결 등록 통지서가 귀하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우편 송달된 후 **30** 일 내에 귀하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거나 해당 판결의 무효화(취소) 또는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청구 금액 변제를 위해 귀하의 급여, 현금 및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포함된 경우, 자동차 관리국(DMV)은 귀하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결금액을 전액 지급하면, 판결확정 채권자에게 판결금액 지급 완료를 증명하는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SC-290**, 판결금액 변제 확인서를 참조하십시오.) 판결확정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액 청구 재판에 출석한 경우, 귀하는 소액 청구 재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려면, 판결 등록 통지서가 귀하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우편 송달된 후 **30** 일 내에 양식 **SC-140**,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양 당사자는 증거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 당사자 모두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페이지에 계속)

법원이 상대방에게 귀하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귀하는 판결확정 채권자입니다. 귀하가 판결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이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after-trial/if-you-wi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판결확정 채무자는 판결 등록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30** 일 내에 항소하거나 판결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판결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판결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판결확정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판결확정 채무자가 판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목적물이 재산의 소유권인 경우, 판결확정 채무자에게 해당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판결확정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판결금액 변제를 위해 지방 보안관이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서기가 판결 등록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한 후 **30** 일 내에 판결확정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귀하에게 양식 **SC-133**, 판결확정 채무자의 자산 목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을 통해 판결금액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현금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귀하에게 양식 **SC-133** 을 작성하여 송부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양식 **SC-134**, 자산 목록 제출 및 신문 출석에 대한 신청서 및 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서, 귀하는 법원에 귀하의 변호사 보수, 비용 및 기타 적절한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등록 통지서에 있다고 명시된 경우, 양식 **SC-134** 대신 양식 **SC-136**, 재무제표 제출 또는 신문 출석에 대한 신청서 및 명령—소비자 채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에 계속)



법원이 귀하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계속)

법원이 상대방에게 귀하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한 경우...
(계속)

귀하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액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판결의 무효화(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판결 등록 통지서 및 진술서가 귀하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우편 송달된 후 30 일* 내에 양식 SC-135, 판결 무효화 신청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 통지서가 귀하에게 우편 송달된 날부터 10 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귀하에 대한 청구가 적절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귀하가 그 판결을 알게 된(또는 알았어야 했던) 날부터 180 일 내에 판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귀하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항소 또는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서기가 판결 등록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한 후 30 일 내에 양식 SC-133, 판결확정 채무자의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판결확정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양식 SC-133 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변호사 보수 지급을 명령하고 그 밖에 다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양식 SC-133 을 귀하에게 송부하더라도, 귀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질문에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양식 EJ-125, 출석 및 신문에 대한 신청서 및 명령을 제출하십시오. 판결 등록 통지서에 판결금액에 '소비자 채무와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양식 EJ-125 대신 양식 EJ-141, 신문 출석에 대한 신청서 및 명령—소비자 채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에서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판결확정 채무자의 금융 기록을 확보하려면, 양식 SC-107, 소액 재판 소환장 및 진술서를 작성한 후, 소액 재판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발급받은 다음, 그 사람이나 회사에게 송달되도록 하십시오.

판결확정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알게 된 후에는,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지방 보안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에는 급여, 은행 계좌, 자동차, 영업재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양식 EJ-130, 집행 영장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해당 양식을 채무자의 재산 내역과 함께 지방 보안관 사무실에 가지고 가십시오.

또한 귀하는 판결확정 채무자의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양식 EJ-001, 판결 요약문—민사 및 소액 청구를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귀하가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해당 요약문을 가지고 가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십시오. 판결확정 채무자가 해당 카운티에서 부동산을 매도, 재융자 또는 매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금에서 귀하의 판결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판결금액이 전액 지급되면, 귀하는 판결금액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요약문—민사 및 소액 청구(양식 EJ-001)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 SC-130 또는 양식 SC-290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문이 등록되었다면, 양식 EJ-100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귀하가 판결금액 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 채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발급, 등록과 위에서 언급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수수료를 법원, 법원 등기소 또는 지방 보안관에게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무료로 도움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카운티의 소액 재판 상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정보 기입]

또는 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advisor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